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동욱, 김성준,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강산, 박칠성, 서상열, 서준오, 옥재은, 유정인, 이민옥,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수는 852,304세대이고, 반려동물의 수는 1,120,930마리(개는 766,933마리, 고양이 225,013마리, 기타 128,984마리)로 나타났고, 서울연구원의 “2020 서울시 동물장묘 정책방안”에 따르면 해마다 134,240마리의 반려동물이 죽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관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함.
이에 조례에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고, 자치구 등에 관련 시설의 설치를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고 장묘시설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 제2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이 경우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